

##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
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8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**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오산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** ① 의장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별표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**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**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5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)**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**제6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**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

##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
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,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”는 “「오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4조”로 “동 규정 [별표 1]”은 “동 규칙 [별표 1]”로 본다.
5.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은 인사혁신처의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중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따른다.
6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7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9.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 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본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